

「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9인

3. 제안이유

-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밀의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밀의 자급률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구미시 밀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밀수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우리밀산업 기본계획 수립·시행 및 육성 지원(안 제4조~제6조)
- 우리밀 소비 촉진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밀산업 육성법」 제2조제4호, 제2조제5호, 제3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·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우리밀산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통해 밀 소비량 증가에 맞춰 밀 자급률을 증대시키는 등 적절한 밀 수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, 수입밀 대비 우리밀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격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